

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9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수, 위원임기, 담당간사등을 일체정비하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 구성인원을 " 10인이상 20인이하" 를 "20인이상 30인이하" 로 조정 (안 제2조제1항)
- 나. 당연직 위원에 "제109보병연대 1대대장"을 추가(안 제2조제2항 제4호)
- 다. 각 분야별 담당간사중 조직 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른 담당간사 변경 (안 제2조제3항 제2.3.4.5호)
  - "민방위.예비군담당간사"에 "자치행정과 병무담당주사"를"민방위담당간사에 자치행정과장" 을 "예비군담당간사"에 "제109보병연대 1.3대대 동원장교"로 하고,
  - "작전담당간사"에 "평창경찰서 경비과장"을 "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" 으로 " 제109보병연대 3대대 작전장교"를 "제109보병연대 1.3대대작전장교" 로
  - "정보담당간사"에 "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"을 추가하였음.
- 다. 위촉위원의 임기를 " 2년" 으로 하고, 연임가능규정을 신설함(안 제 2조제4항)

## 3.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발췌서(붙임)

#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1항중 "위원10인이상 20인이하"를 "위원20인이상 30인이하"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중"제109보병연대3대대장"을 "제109보병연대 1.3대대장"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2. 민방위담당간사 : 자치행정과장

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예비군담당간사 : 제109보병연대 1.3대대동원장교

제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4. 작전담당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1.3대대 작전장교

제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정보담당간사 : "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",제109보병연대기무반장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④제2항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 <2000. . .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①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<u>위원10인 이상 20인 이하</u>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~ 3.(생략)  <u>4. 제109보병연대3대대장</u>                      5.(생략)</p> <p>③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,부의장 및 각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</p> <p>1. (생략)  <u>2.민방위.예비군담당간사 : 자치행정과 병무담당주사</u>                      &lt; 신설 &gt;</p> <p><u>3.작전담당간사 : 평창경찰서 경비과장, 제109보병연대3대대작전장교</u></p> <p><u>4.정보담당간사 :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</u>                      &lt; 신설 &gt;</p>	<p>제2조(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)①</p> <p>----- <u>위원20인 이상 30인 이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(현행과같음)  <u>4. 제109보병연대1.3대대장</u>                      5.(현행과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  <u>2.민방위담당간사 : 자치행정과장</u></p> <p><u>3.예비군담당간사 : 제109보병연대 1.3대대동원장교</u></p> <p><u>4.작전담당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1.3대대작전장교</u></p> <p><u>5.정보담당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기무반장</u></p> <p>④제2항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</p>

# 관계 법령 발췌서

## □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(지역협의회의 구성틀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·광역시·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·군·구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 관계자
4. 지방검찰청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병무관서의 장
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0. 지방의회 의장
11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## □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2조제3항

③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양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·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총무담당간사 : 자치지원국장
2. 민방위담당 간사 : 자치지원국장
3. 심리전담당 간사 : 공보관
4. 작전담당 간사 :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과장, 보병 제36사단 작전참모
5. 정보담당 간사 : 국가정보원강원지부 대공수사처장, 제201기무부대 방첩과장
6. 예비군담당 간사 : 제1군사령부 예비군과장, 춘천지방병무청 동원과장